

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, 콜센터용) 안내

1. 관련:

가.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달(사업장용, 콜센터) 및 안내
(산업보건과-4839, '20.11.12.)

나.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안내(중수본-20199, '21.6.29.)

2. 최근 중수본의 「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('21.6.29)」에 따라, 새로운 단계
(기존 5단계→4단계로 조정)를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,
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1.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). 1부.
2.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콜센터). 1부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

수신자 산하기관(11개기관)

전문위원 송재우 보건사무관 황규석 산업보건기준 전결 2021. 7. 19.
과장 김정연

협조자

시행 산업보건기준과-201 (2021. 7. 19.) 접수

우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반곡동 771-62 고용노동부(별관) 산 / www.moel.go.kr
업안전보건본부 3층 산업보건기준과

전화번호 044-202-8878 팩스번호 044-202-8093 / jaewoo12@korea.kr / 대국민 공개